

형사정책연구소식

KIC BULLETIN

통권 제60호
2000년 7/8월호

논 단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	2
•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	정 완	10
• 독일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발찌 도입에 관하여	김혜정	19
•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최병각	24

제 언

• 사형은 폐지대상이 아니다	조병인	30
• 공창은 과연 필요한가?	배현정	34

형사정책 주요동향

•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의 확대 적용 - 독일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	37
• 캐나다 : 피해자권리의 강화	39
• 일본 : 테라크라의 형사적 제재	40

연구원 동정

44

새로 들어온 책

47

현상퀴즈

50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범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10년간 연구성과 축약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刊

改 訂 版

刑 事 政 策

4 · 6배판 / 640쪽 / 25,000원

박상기 (연세대 교수)
손동권 (건국대 교수) 공저
이순래 (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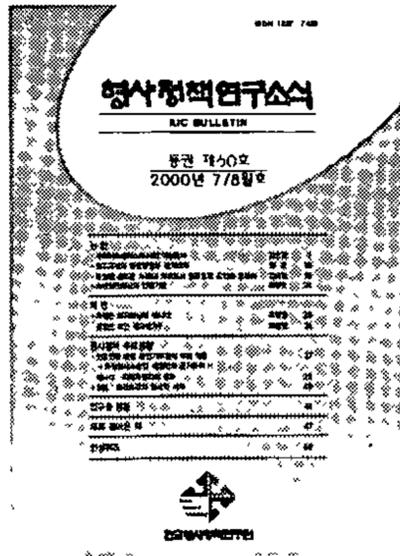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0년에 걸쳐 출간한 25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참조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 · 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www.kic.re.kr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7·8월호 (통권 제60호)

논 단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 2
-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 정 완 10
- 독일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발찌 도입에 관하여 김혜정 19
-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최병각 24

제 언

- 사형(死刑)은 폐지대상이 아니다 조병인 30
- 공창은 과연 필요한가? 배현정 34

형사정책 주요동향

-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의 확대 적용 37
- 독일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
- 캐나다 : 피해자권리의 강화 39
- 일본 : 테라크라의 형사적 제재 40

연구원 동정

44

새로 들어온 책

47

현상퀴즈

50

형사정책연구소식

7·8월호(통권 제60호)

발행일 / 2000년 8월 31일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희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575-5282/9

등록 / 1990년 9월 14일 마 - 1611

인쇄처 / 화신문화(주) 전화 2277-0624

편집 / 출판실 전화 571-0363 / 비매품

인터넷홈페이지 : www.kic.re.kr

ISBN 1227 - 7428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1. 사이버스페이스와 성차(gender)

사이버 공간에서 성차(gender)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사이버 페미니즘(cyber-feminism) 이론가들은 양극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인종, 나이, 성별, 육체에 의한 차별이 희박해지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보거나 적어도 대면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나타나는 성적 억압이나 차별의 구조가 약화된 곳, 따라서 성별 구성력의 재코드화를 통해 현실세계의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해체(전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Haraway, 1991; Balsamo, 1995; Braidotti, 1996). 이들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온라인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인간이 사이버 스페이스로 가져오는 낡은 관습의 문제일 뿐, 현실공간의 의미들이 재코드화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더 이상 여성에게 위협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기존의 성차별적인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또하나의 공간으로, 새로운 권력작용의 문제



김은경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를 이슈화하는 입장이 있다 (Spender, 1995; Troung, 1993; Kramarae & Kramer, 1995; Schweber, 1996).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성차(gender)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접근이 배제되어 발생하는 정보불평등의 문제(Rogers, 1986; 이선영, 1999), 사이버상의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구자순, 1999; 김유정·조수선, 1999; 윤선영,

1999), 포르노그래피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성상품화 및 대상화의 문제(이수연, 1999)에 초점을 두고 있다(우지숙, 1999: 244). 이들 급진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현실공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기제이다. 온라인 성폭력을 현실공간의 성폭력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없지만, 온라인 성폭력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별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성의 '자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Turkle, 1996: 251-253). 사이버공간은 여성에게 자신을 확대하는 남성파트너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이버공간의 가부장적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이버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반박한다(Michals, 1995; 윤세정, 1999:16 재인용).

2. 문제의 현실 : 정보불평등과 사이버 마초이즘

1990년대초 미국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은 익명성, 비대면성,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매체적 속성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사이버스페이스에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의 정체성이 구성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사이버문화의 해방적 기대를 위협하는 두 가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1) 위협성의 한가지는 정보불평등이다. 실제 사이버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현실 세계의 구성원과 대비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생산직 보다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 사이버문화의 구성원들이 편중되어 있을 때, 그것은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소수집단 간의 갈등을 더욱 증가시켜서 다원적 문화형성 및 해방적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문화파시즘을 강화할 수도 있다. 성별 정보불평등의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차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통신공간의 성비는 7 : 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이선영, 1999:4).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수

라는 문제는 사이버공간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다는 점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사회의 “남성지배적 문화”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오히려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사이버공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최은정, 2000: 5). 따라서, 현재처럼 정보사회의 여성의 참여와 접근이 체계적·구조적으로 배제되고, 기술적 및 Contents 구성상의 소외가 지속된다면, 실제 한국사회에서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는 해방적 잠재력은 상업화의 물결에 흡수되거나, 남성중심적 권력과 결탁하여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2) 또다른 위협성은 사이버 마초테러(Cyber-Macho terror)의 등장이다. 마초(Macho)는 권위적이고 공격적 남성다움을 의미한다. 영화적 이미지로 보면, [람보]와 같은 근육질과 공격적 영웅상(hero figure)이 마초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구조적 변동과 함께 남녀간의 친밀성 구성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마초맨은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의 대중문화는 그러한 변화 움직임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가령, 과거의 “마초맨” 대신에 나약함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비추어지는 부드러운 남자, 소위 “슈거맨”이 새로운 남성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의 새로운 문화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문화시대에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던 마초맨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사이버 마초들은 근육질 대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대화명과 방제로, 그리고 과격한 언행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낸다. 그들의 무기는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된 폭력적 언어이며,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게재하는 무차별적 도배질이다. 여성운동단체나 여성문제가 쟁점이 된 게시판은 이들이 날리고 간 논점없는 욕설과 여성적대적 비방으로 오염되어, 자체 폐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온라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한 조사(이순형, 2000)에 따르면, 채팅과정에서 여성이용자의 58%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 신상정보 및 전화번호가 음란사이트 게시판, 매춘알선란, 인터넷 공개미팅 게시판에 등록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전화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등,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한다.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몇몇 연구자료(윤세정, 1999; 정진욱, 1999)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사이버 마초들이 상주하고 있고, 여성들은 그들의 테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Cyber-Macho Culture¹⁾의 계기와 과정들

흔히,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요인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매체적 특성, 즉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의 특수성, 익명성(탈억제효과) 및 가상성(실재감의 결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익

명성'과 '비대면적 상황'이라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매체적 특성만을 가지고는 '왜 공격의 주체가 주로 남성인가', '왜 공격의 대상은 여성일 경우가 많은지'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 이 두 물음에 대한 해답은 스톤(Stone, 1991)의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가상(virtual) 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정상적인> 리얼리티의 범주들을 통해 <버추얼> 리얼리티를 코드화한다고 주장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참여자들은 마치 물리적 공동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사건으로, 개인사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이다(김혜인, 2000:9).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은 오프라인과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공간이다.

실제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상에서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고 판단되는가? 가령, 채팅에서도 대화개시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별이다. 채팅에서는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몸과 차림새와 같은 정보는 없지만, 성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디와 대화명, 말투 등을 단서로 상대방의 실제 성별을 추측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1) Macho-culture는 공격적 남성다움, 욕구에 대한 분방한 표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표현과 표출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남성다움의 총체적 표현을 의미한다. Spender(1995)의 글에서 인용된 Lynda Davis(1994)의 연구에 따르면, Macho문화는 사이버내에서 자신들이 선점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타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적대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아이디와 대화명은 온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코드가 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쓰는 말투가 다르다는 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현실공간보다 오히려 과장되기도 한다. 사회적 맥락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팅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아이디와 대화명을 성별화하여 상대의 성별을 추측하고 있다. 또한 채팅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이 성별화 질서를 벗어나는 여성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별화의 질서를 구성·유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첫째, Cyber상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실제보다 더 과잉코드화된다는 점, (2) 둘째, 육체가 사라진 Cyber공간에서 육체와 성에 대한 강박적 관심이 더욱 노골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gender 문제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 결합된 몸과 성(sexuality) 문제를 통해 더욱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사회적인 존재조건이 젠더와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영유하는 문화적 방식인 섹슈얼리티, 이 둘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²⁾

현실세계에서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가는 마초맨이 오히려 가상공간에서는 왜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과 계기들을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강박적 관심

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Giddens(1992)의 해석을 따라, 사이버마초의 등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현실세계의 사회변화-조형적 섹슈얼리티 및 낭만적 사랑복합체의 등장-은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자아의 성찰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에서 자아에 대한 서사(narrative)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성찰적 기획(reflexive project)이 되고 있지만, 성분할의 완고함 때문에 남성들은 구조변동에 '지각생'이 되고 있다. 남성들은 모더니티의 발전궤적의 중요한 경향을 잘못 읽고, 일에서 자기정체성을 찾으려 할 뿐, 자아의 성찰적 기획에 반드시 과거의 감정적 재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성이 남성에게 의해 통제되었던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통제가 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남성 섹슈얼리티의 강박적 특성은 보다 쉽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감정적 심연은 훨씬 더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지체자들이 전통적 성의식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억압되고 에너지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 가령, 탈규제적·탈억제적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했을 때, 자신들의 문화적 코드로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와 관념을 익명성과

2) 섹슈얼리티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의 축들을 접합하면서 만들어진다. 하나의 관계축은 주체성과의 관계 -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 이고, 다른 한축은 사회의 관계 - 이는 미래의 성장, 복지, 건강, 전체인구의 증식과 관련된다 - 이다. 이 두 가지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양자 모두 그 한가운데 육체와 그 잠재성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비대면성에 기대어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잃어가고 있는 남성성 집착을 통해, 역설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박적 의존을 드러내게 된다.

4. 역전의 단초 : 새로운 성 정체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육체가 부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상 육체가 부활하고 있다. 가상육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현실에서의 권력문제가 반복될 것인가, 극복될 것인가 하는 관건이다. 현실에서의 권력관계가 가상육체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구현되는 양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권력의 구현양식을 전복시키는 것에서부터 해방적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권력에 의해 생산된 담론에서 저항권력의 모태를 발견해야 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육체가 식민화전략, 권력의 재생산전략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저항점 역시 가상육체(사이보그) 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사이버공간에서는 적어도 여성문제에 관한 한, 평등성과 개방성, 탈중심화의 잠재력보다는 오히려 현실 권력관계의 어두운 측면들, 그리고 정형화된 성차별적 상황이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 사이버문화는 아직 '구성중인' 문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역동성과 전복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간에서의 gender문제는 새로운 성 정체성의 발전가능성에 의해서 역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Poster(1992)는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CMC)경험이 개인의 정체성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갈아입을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중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가상성(virtual reality)'이다. 가상성은 reality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 또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육체적 구속성이 없어짐으로써, 자신의 관심에 따라 새로운 자아(정체성)를 표현할 수 있다. Poster(1992)는 virtual reality상의 시뮬레이션화가 고착된 양성으로 이루어진 지배적인 성시스템을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성별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강력한 방식으로 개인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내가 남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아가 나는 내 성별선택을 어떤 신체표시나 표정도 없이 의복이나 어조도 없이 언어로만 해야 한다. 자신의 성별을 제시하는 일은 순전히 텍스트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김혜인, 2000: 8 재인용).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단일적인 정체성에 대한 가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CMC)에서 개인의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화면에서 의도되는 방식과 내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이란 그것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영역에 좌우된다.

Turkle(1996)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온라인 성별바꾸기(gender swapping)를 시도한다. 성별바꾸기는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각자의

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맞는 역할을 구성해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성차의 형성과 구성맥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각기 다른 성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한다. 비록 커뮤니케이션의 성별화된 양식들이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남아있지만, '복장도착' 또는 '다른 성의 전용'을 통한 '추체험'과 '유사적 삶'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한다. 소위, 새로운 성 정체성의 등장을 예고한다.

5. 결론 : 저항전략으로서의 성찰성과 "유연적 자아"

잘 통합된 자아 정체성은 근대적 자본주의적 경쟁체계가 강요한 사회적 경직성에 잘 조화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자아는 이러한 경직되고 통합된 자아의 형태를 벗어난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면적인 자아의 내면모습을 드러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합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분열된 자아가 자아내부에서 서로 흩어져서 존재한다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Turkle(1996)은 이러한 과정을 '다인성 질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건강을 "다양한 자아에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정의하고, computer role-playing game이 자가치료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다면적 인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열되고 다면적이고 흩어진 인성이라기 보다는 '유연적 자아(flexible self)'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echt에 따르면 "다면적 성향이 해체와 분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개인은 매개된 상황이나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인지적 부조화를 피하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다면적 자아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자아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전해가는 것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언어와 사회에 의한 규제가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법칙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법칙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추체험'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입장을 내가 겪음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와 발전의 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유연한 자아의 모습이 필수적이다(김혜인, 2000: 10).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공간은 인간의 추체험을 늘려주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합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잠재력이 무한하다. '유연한 자아' 개념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아분열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분열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의 개인간의 구분자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한 개인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늘 '새로운 중심찾기'의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류승호, 199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신상에서 인격을 선택할 때 경계를 넘나들며, 자아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변화한다. 유연한 자아모델을 특징짓는 것은 열린 의사소통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아소통은 포스트모더

이즘이 죽었다고 했던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시뮬레이션 문화는 다양한 비전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자아에 접근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상세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자아들을 “성찰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바로 성찰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들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엄숙주의적 성규범 코드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포스트모던적 문화양식에 적절한 성찰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화사회에 조응한 성정치의 발전방향 및 성사회화(sexualization)의 적실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즉, 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의 기술, 다원주의적 윤리학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Balsamo, Ann(1995), “사이버공간의 가상육체”, 홍성태 편(1997), 사이보그, 사이버컬쳐, 문화과학사.
- Braidotti, Rosi (1996), “Cyber-feminism with a Difference, in New Formations: Technoscience, No. 29(summer); http://www.let.ruu.nl/womens_studies/rosi/cyberfem.html.
- Giddens, Anthony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배은경·황정미(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 Haraway, Donna(1991),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1980s”,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49-181: <http://www.legend.stanford.edu/dept/HPS/Haraway/CyborgManifesto.html>; 임옥희 역(1995),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8호, 문화과학사.
- Kramarae, Cheri and Jana Kramer (1995), “Net gains, Net losses”, *Women’s Review of Books*, Vol. 12, No. 5(feb).
- Michals, Debra (1997), “Cyber-Rape: How Virtual Is It?”, *Ms.* March/April.
- Poster (1990), *The mode of information-Poststructuralism & Social Context*, 김성기(역),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 Rogers, Everett M. (1986),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김영석 역(1988), 현대사회와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서울: 나남.
- Schweber, Howard (1996), “And then the Failroad Came : Law, Pornography, and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http://web.mit.edu/womens_studies/scshweber.html.
- Shade, Leslie Regan (1993), “Gender Issues in Computer Networking”, : <http://www.mit.edu:8001/people/solokin/wo>

- men/lrs.html.
- Spender, Dale (1995), *Nattering on the Net: Women, Power and Cyberspace*, Melbourne: Spinifex Press.
- Stone, Allucqure Rosanne (1991), "Will the Real Body Please Stand Up?: Boundary Stories About Virtual Culture", *Cyberspace: First Steps*, M. Benedikt(Cambridge, MA: MIT Press):81-118.
- Troung, Hoai-An (1993),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 <http://eff.org.pub/Net-culture/Gender-issue/cmc-and-gender.article>.
- Turkle, Sherry (1996),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구자순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성정체성과 의사소통형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4호: 5-40.
- 김유정 · 조수선 (1999), "새로운 매체, 새로운 성차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제25-1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19.
- 김혜인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정체성", <http://cyberculture.re.kr/forum/paper/self.htm>.
- 류승호 (1997),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봄호)*.
- 우지숙 (1999),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문제", *한국언론학보*, 제44-1호 (겨울), *한국언론학회*:244-286.
- 윤세정 (1999),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의 PC통신 채팅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배제 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 -PC통신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1999), "사이버포르노와 여성: 사이버 포르노의 인식론, 수용 그리고 Gender", *한국언론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제25-1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21-32.
- 정진욱 (1999),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자료문*, 새정치국민회의:9-27.
- 최은정 (2000), "온라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http://cyberculture.re.kr/forum/paper/cyfemi.htm>.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

1. 서 언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수십 명의 파렴치한들이 원조교제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 5급 공무원, 객원교수, 중소기업 사장, 명문대 대학원생, 건설회사 간부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어서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 일체를 아동의 성착취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다룰 원조교제는 아동매춘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이며, 따라서 이를 성폭



정 완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력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른바 '원조교제'에 대하여 그 개념과 유형, 추이,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조교제의 개념

원조교제의 발생지는 일본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언론들이 일본인들의 성적 타락을 비판하는 어조

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를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서도 원조교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별다른 대체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매춘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원조교제는 쉽게 설명하면, 나이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 '교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 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1) 원조교제의 현황과 사례에 대한 상세는 여성중앙21, 2000년 2월호 특집기사 참조.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셔주거나, 같이 놀러가는 것에서부터 각종의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 허용 등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 남성과 성인 여성 또는 어린 남성과 성인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서로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²⁾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원조교제는 동법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9호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50조(벌칙) 제4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³⁾ 또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조교제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

하며, 이 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20조(범죄방지 제도)에 의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원조교제의 유형과 추이

가. 원조교제의 유형

원조교제의 유형은 크게 기존 서비스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형 원조교제'와 전화방, PC통신 등에 의하여 직접 연결하는 '기타 원조교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업형 원조교제는 다시,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와 알선(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중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의 알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기타 원조교제는 다시 전화방이나 폰팅 등 일정한 매개장소나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조교제와 중간 매개체 없이 여성이 직접 거리에서 혹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자와 연결하는 원조교제로 나눌 수 있다.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조교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불법 취업한 미성년자와의 원조

2) <http://www.supporters.or.kr/원조교제.htm> 참조.

3) 동 조항은 원조교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5일에 신설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정동채, "원조교제의 실태와 억제방안에 관하여", 1999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 및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참조.

교제에서부터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원조교제의 방법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이벤트사나 전화방, 폰팅, PC통신 등을 통한 음성적이면서 표출화되지 않은 원조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단속법안이 제정될 때마다 신종 원조교제 방법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원조교제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⁵⁾

나. 원조교제의 추이

국내에서 원조교제의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며 그 매개체가 된 것이 바로 전화방이다. 전화방은 일본에서 수입될 때부터 성적인 타락을 조장할 것으로 예측됐는 바 그것은 전화방이 이미 일본에서 원조교제의 접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측대로 전화방을 찾는 아저씨들과 10대 소녀의 폰팅을 통한 접촉은 원조교제로 쉽게 발전했다. 그러나 1998년까지만 해도 원조교제는 극소수의 비행소녀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졌고 적발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⁶⁾

본격적인 원조교제는 1998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게임방을 통하여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방의 컴퓨터

전용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10대들은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대신 용돈을 두둑히 줄 성인남성들을 찾기 시작했다.

즉, 인터넷 대화방이 원조교제의 창구로 급부상한 것이다. 최근 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의 70% 정도가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가입한 채팅전문 인터넷사이트 '하늘사랑(SKY-LOVE)'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대화방을 개설하고자 하는 방장이 비공개로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PC통신은 실명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방에서는 누구든지 인터넷 대화방에 들어가면 가공의 대화명으로 비공개 대화방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대화형 문자서비스도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래 이 서비스는 증권이나 날씨, 프로야구, 뉴스 등을 알려주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음란성 메시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중에 화제가 됐던 '오양 비디오' 등을 구하거나 판다는 매매정보가 버젓이 떠 있는가 하면, 구직란은 아예 '원조교제 하실 분', '하룻밤 지내주실 분' 하는 식의 메시지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다.

수도권 전철역 주변의 유흥가나 변화가 등

5) 정동채, 앞의 글 참조.

6) 정부는 1999년 4월 10대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알려진 전화방의 음란 폰팅용 전화회선 1천 2백여개를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내 유흥가의 상당수 업소들이 '휴게방'으로 간판만 바꿔 단 채 전화, 비디오 시설 등을 갖추고 이성들과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0.1.13일자 25쪽 참조.

청소년들의 발길이 잦은 지역에서의 원조교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게임방이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성인남성을 유혹하는 10대 소녀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린 소녀와 중년 남성 커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명단공개가 행해지면 일시적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원조교제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대화방은 앞으로도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4.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원조교제는 전통형 매매춘과 달리 유입경로가 다양하고, 매춘행위자가 매춘상대자와 직접 비밀 접촉이 가능하다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이 대단히

어렵다.⁷⁾ 따라서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원조교제의 진원지인 일본의 경우⁸⁾를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친 경제의 풍요와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구소련 간의 냉전체제사이에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중반 거품경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일본국민은 소비취향은 고가의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춘기의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소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성인과 원조교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⁹⁾ 또 다른 원인은 통신매체의 발달, 특히 전화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신매체의 발달이 원조교제의 매개체로 작용한 것이다.¹⁰⁾

일본과 우리 나라의 원조교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원조교제는 정력은 쇠퇴

7) 이밖에 원조교제는 아르바이트적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 또는 서비스 지원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속성을 들 수 있다. 김성경,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7. 참조.

8) 黒沼克史, 「援助交際-女子中高生の危険な放課後」(文藝春秋社, 1997) p29.

9) 일본에서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들을 일컬어 '고가루' 족이라 한다. '고도모(어린이)'의 '고'에 걸(girl)이라는 영어가 붙은 합성어인데, 이 고가루족은 공통된 외관상의 특징을 갖는다. 소위 '세라복'이라고 불리는 교복과 짧은 치마, 유명 상표가 붙은 핸드백, 휴대용 전화, 종아리를 덮는 양말 등이 바로 그것인데 휴일에 길거리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다. 보통은 옷이나 화장품 정도의 선물이나 일정액의 돈을 대가로 한두 시간씩 같이 어울리지만 합의만 되면 술을 먹거나 윤락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고가루의 개념에 대하여는 조선일보 2000.1.17자 기사 "성인식과 고가루" 참조.

10) 1985년 시행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원조교제를 활성화시켰다. 우리의 전화방에 해당하는 데레크라(テレクラ) 1호점의 오픈은 新風營法이 시행된 1985년이었고, 이 확장은 NTT의 기술력에 의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NTT는 1987년 '전언다이얼 서비스', 1990년 '다이얼 Q2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업자들의 사업을 더욱 용이하게 확장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李銀宅, 素人の時代と「援助交際」(慶星大學校 日本研究論叢, 1997) pp.67-82.

하고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중년남성의 허무감과, 성에 대한 호기심, 용돈 마련 외에도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중년남성을 통해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를 달성하려는 소녀의 심리가 상호 보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인간적 갈등과 범죄가 어우러진 형태로 단순 매매춘 관계가 아니므로 둘간의 관계도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한다. 반면 우리 나라의 원조교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매매춘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원조교제로 검찰에 적발된 남성을 보면 원조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은 20대 후반~30대 초반(71%)이며 미혼이 78%다. 성관계도 일회성이 82%다.

국내에서의 10대 매매춘은 IMF한파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고 빈민층이 증가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핸드폰, 옷, 음반 등 10대를 광고모델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물지각한 상흔도 소녀들을 윤락행위로 나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천민 자본주의' 의식도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킨다.

성에 대한 이중 잣대도 문제다. 개봉된 영화에 대한 포르노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는 엄격한 성적 도덕관을 내세우지만 우리 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률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고소·고발율이 서양은 30%인데 비해 국내에선 3.6%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다.

매매춘의 대상이 된 소녀들의 미래는 참담하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성인이 되어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맺을 때 성숙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윤락가를 전전하며 굴곡진 인생을 보내기도 쉽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남성은 청소년을 파멸로 몰아가는 범죄자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인 소녀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정신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¹¹⁾

이하에서 원조교제의 발생 및 증가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남성의 성의식 마비이다. 최근 여성개발원이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춘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나 됐다. 많은 남성들이 매춘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춘의 공급은 이같은 수요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10대 시장이 원조교제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 나라 10대 시장 규모는 5조원에서 15조원까지로 추산된다. 원조교제에 나서는 많은 여·중고생들은 옷, 휴대폰,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사거나 유희비로 충당하기 위해 서라고 한다. 10대 시장은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10대들의 경쟁적인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11) "의학적으로 접근해본 10대 매매춘 문제점", 중앙일보 2000.1.20자 관련기사 참조.

셋째,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몰아가는 로리타 신드롬이 문제이다. 업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성고객들의 「소녀 선호」를 부추긴다. 일본의 원조교제, 「부루세라」, 영국의 피도파일(paedophile:소녀사냥꾼), 독일의 미성년자 섹스관광, 대만의 회춘 매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30%가 미성년자이다.

넷째, 음란·외설 정보의 범람이다. 포르노, 인터넷 음란사이트, 외설잡지, 만화, 영화 등 눈만 돌리면 빨간 색이다. 이런 곳에서는 변태, 폭력, 근친상간 등 왜곡된 성의식이 일상화되며 매춘마저 미화된다.

다섯째, 가족해체의 문제이다. 최근 이혼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이 안식을 찾을 곳이 줄어들고 있다. 1998년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10대 소녀 5,048명중 80%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고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 청소년들은 섹스 서비스산업의 「취업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향락산업의 비대화이다. 3차 서비스산업의 주류가 향락산업, 퇴폐이발소, 티켓다방, 유흥주점, 증기탕,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성개방 풍조와 배금주의 사상의 만연이다. 성은 언제든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1998년말 윤락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서울시내 16개 이벤트사의 회원은 여대생(251명), 주부(679명), 직장여성(450명), 모델(172명) 등 2,500여명으로 이러한 구성비율은

우리 사회의 성개방풍조와 배금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5.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법

우리 나라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보 등에 원조교제 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찬반양론이 크게 대립되었고 현재도 그 공개절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 시민과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입법추진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현 소재지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이른바 '메건스 로(Megan's Law)'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과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

이 법은 뉴저지주의 메건 캔타라는 7살 짜리 여자 어린이가 1994년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폭력범죄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메건 캔타의 부모는 경찰이 이웃에 성폭력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하

12) 정동채, 앞의 글 참조.

자”는 명분 하에 연방과 주정부들이 앞다투어 1996년부터 이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 이외에도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성폭력범죄자로 다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어린 여학생과 원조교제를 즐기는 성인들은 미국에 가면 성폭력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위험성 정도(매우 위험, 보통 위험, 약간 위험)를 결정하고, 성폭력범죄자 관련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범죄, 거주지 등 상세한 정보가 경찰에 등록되고, 주민들은 이 정보가 수록된 CD를 볼 수 있으며,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다. ‘매우 위험’ 판정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자 스스로도 이사가는 곳마다 경찰에 자신의 소재를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통고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사회는 비상이 걸린다. 부모, 학교, 유치원

마다 아이들에게 이웃에 사는 성폭력범죄자의 인상을 알려주고 절대 조심을 당부한다. 성폭력범죄자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분이 곧 탄로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친구와 이웃관계가 단절되며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자에게 이런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은 이중처벌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논의가 한 때 있었으나 미국 연방항소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인권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근거에서였다.¹³⁾

6. 원조교제의 방지대책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으려는 타락한 성문화는 이 땅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원조교제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법적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조교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흥업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

13) 배금자, 중앙일보 1999년 12월 31일자 7쪽 관련기사 참조.

14) 이밖에도 주변환경 규제 및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서, 유해환경감시를 위하여 시·군·구 및 경찰서, 읍·면·동 및 파출소별로 지역책임제를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역별 단속활동 책임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불법고용 등 사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동 대응할 것, 단속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 강화, 주기적·반복적 정신교육 실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실시, 감사결과와 이행여부 점검, 시민 모니터링 실시, 관련업소 수시 탐문 등을 실시할 것, 검찰·경찰 및 단속공무원 등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동채, 앞의 글 참조.

의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불법고용 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하며, 무허가업소일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장 폐쇄, 시설물 봉인, 간판철거, 단전·단수 등을 비롯하여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및 허위의 구인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정게시판 이외에 역·터미널 등 대중통행 장소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등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허위의 벽보·전단 등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추적하여 의법 조치하고, 최근 범람하고 있는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불법허위 구인광고를 제지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지 발간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¹⁵⁾

둘째,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즉, 각급 학교별로 재학생에 대하여 유해업소의 출입예방을 위한 교육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출 등 비행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지도역할을 제고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예컨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¹⁵⁾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화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셋째, 업소운영자의 자율정화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시·군·구별로 업소 운영자들로 구성된 유해환경 자율정화위원회를 운영하여 반상회 또는 시·군·구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한 홍보·강화, 지역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지구,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결의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등을 민간 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한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 각 자치단체별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넷째, 관련 법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입법의 불비가 나타날 때에는 신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기타 청소년보호법·윤락행위방지법·풍속영업규제법 등 관련법령의 상호 모순점과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¹⁶⁾

15)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淫行條例'를 소개한다. 일본의 대부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는 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음행' 또는 '음란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다. 체포되면 대부분 기소된다. 형벌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엔에서 100만엔의 벌금형 혹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다. '음행'의 개념 및 최고재판소 해석 등에 대한 상세히는 <http://w3.scan.or.jp/osaka/in kou/page01.html> 참조.

16) 이밖에 청소년 관련 조직과 인력양성 체제구축도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청소년조직의 기능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확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 요망된다. 정동채, 앞의 글 참조

7. 결 어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성의 노리개로 삼는 타락한 성문화의 표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이 신청한 원조교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50%를 간신히 웃돌고 있어 원조교제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¹⁷⁾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범죄자의 신상공개 장소 및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어 원조교제 범죄자의 명단과 주소,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1개월),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1개월) 등 세 곳에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하는데¹⁸⁾ 이는 당초 시·도·군·구청 게시판(1개월),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게시판(1개월), 관보, 중앙청사 게시판(1개월),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등에 게시키로 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에까지 이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조교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축소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¹⁹⁾

원조교제는 그 자체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원조교제 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살해하거나²⁰⁾ 원조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거나²¹⁾

원조교제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CD로 제작, 음란물 판매로 이어지는 등이 그것이다.

원조교제는 우리 성인 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의 한 현상으로 성적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인사회의 도덕재무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17) 이는 같은 기간 5,993건 중 823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13.7%의 기각률을 기록한 전체 형사사범 기각률의 3.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청소년 및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조교제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61건(명수기준)의 구속영장 가운데 50.8%인 31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원조교제 사범을 적발하고도 다른 영장 기각사례에 비추어 발부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경찰에도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00.7.20자 관련기사 참조.

18) 조선일보 2000.7.20자 관련기사 참조.

19)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전술한 미국의 메건스 로와 같은 강력한 내용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다시 한번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원조교제 범죄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 "원조교제 뒤 돈 안 주자 10대 소녀 살인 저질러", 조선일보 2000.7.31자 27쪽 참조.

21) "[색연필] '원조교제 이른다' 여고생이 협박 갈취", 조선일보 2000.7.20자 관련기사 참조.

독일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발찌(elektronische Fussfessel)” 도입에 관하여

1. 들어가는 말

격리와 구금이라는 종래의 시설내처우가 많은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아오면서 그 폐해를 없애고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와 비행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 기술 등 문명의 발달,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인권보장과 참여의식의 증가, 교정 및 행형에 관한 외국의 선진기법의 소개와 도입,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증가 등에 기인하여 범죄에 대한 처우개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서 기인한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처우가 갖는 물리적·심리적·사회적 공간의 제약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김혜정

(연구원, 법학박사)

극복하고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범죄자의 개별적인 처우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 처우의 다양화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기되어 실시된 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된 방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자감시제도 (electronic monitoring system)를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과 접목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회내처우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중¹⁾ 지난 5월 2일 처음으로 Hessen州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하게 되었고, 7월10일의 두 번째 사례와 7월 24일의 세 번째 사례를 계기로, 다음에서 Hessen州 Presseinformation²⁾을 중심으로 독일의 상황을 요약·정리해 본다.

1) 1999년 BewHi(Bewährungshilfe) 1호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논쟁 및 외국사례검토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

2) www.hessen.de/justiz/Presse/에서 자세한 자료검색 가능.

2. 도입배경

1997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학문적·정책적으로 그리고 실무사이에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구금의 도입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전자통제에 의한 집중감시(Intensivberwachung mit elektronischer Kontrolle)”는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 1994년부터 단기자유형에 대한 선택형으로 실시되어왔고, 스웨덴에서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특히 웨일즈) 그리고 스위스 등에서 상응한 프로젝트가 도입·검토 및 실시의 단계에 있고 그러한 시도가 독일에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 비교법적 분석

Hessen州는 5월 2일에 2년간의 계획 하에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구금이라는 시범모델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범은 Freiburg에 있는 Max-Planck 형법연구소 Albrecht교수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이루어졌다. Max-Planck 형법연구소는 학문적인 뒷받침을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했다.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구금의 규칙에 대하여 스웨덴과 독일에서 제재방법의 비교법적 분석과 관련하여 -Haverkamp의 박사학위논문에서처럼- 설문을 통해 스웨덴과 독일의 전자감시 재택구금을 위한 실무가들의 견해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중요한 목적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82%)들이 자유형의 회피에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줄이고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기대와 관련된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보호관찰부 형중지를 위한 선택으로 혹은 3-6개월

사이의 단기자유형에 대한 선택으로 가능하다고 거론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응답자의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은 위험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반드시 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되는 범죄인이 전자감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사례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이러한 범죄인그룹에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전자감시가 독일에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처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법무장관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1999년 4월에 최종보고를 하는 가운데 연방州들의 행형법개정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범모델 실시가 제기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행형법의 필요한 개정은 물론 아직 없었다.

Hessen州 법무성의 형법담당은 (1997년부터 “형사정책과 행형”의 연구팀을 통해) 긍정적인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Frankfurt법원에 시범모델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현행 법규의 근거 위에서도 전자감시가 보호관찰부 형중지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Hessen州에서는 현행 독일법 하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① 법원이 2년이하의 자유형의 중지와 관련하여 지시(부과)로서 선고할 수 있다 (독일형법 제56조, 56조c 2항)
- ② 독일형법 제56조e, 56조c에 따라 보호관찰감시를 실시하는 법원의 보충적인 결정을 통해 이미 중지된 형벌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해 부가될 수 있다.

- ③ 예를 들어 자유형의 2/3집행 후에 (가) 석방되더라도 3-6개월 정도의 처음 과도기에 집중감시가 필요한 피선고자들의 잔형증지를 위해 선고될 수 있다(독일형법 제56조a이하와 연계된 제57조 3항)
- ④ 위험한 범죄자 혹은 독일형법 제68조b에 따라 정신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의 집중통제를 위해 행장감독의 범위안에서 선고될 수 있다.
- ⑤ 만약 용의자에 대한 주무판사의 명령이 미결구금교도소 밖에서도 집중통제로 달성 가능하게 된다면, 미결구금의 범주안에서 선고될 수 있다(독일형사소송법 제116조 1항)

나. 전자감시의 기대효과

전자감시의 목적에 대해 독일의 전문가는 스웨덴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들은 하나의 범죄 때문에 보호관찰을 선고받거나 혹은 단기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평균시민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기를 원한다. 스웨덴에서는 특히 예를 들면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이 특정한 그룹으로서 대상자가 된다. 또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과밀구금완화, 구금비용절약, 형집행의 면제, 뿐만 아니라 형벌과 함께 피선고자에게 가해지는 “위해한” 부수효과(Nebenwirkungen)인 범죄인의 낙인효과의 회피와 최소화에 있다.

대상자 선택을 위한 조건으로는 전과, 범죄, 형벌, 나이, 성별, 국적, 소속, 학력, 직업, 직업상황, 대상자의 거주지 등이 조사된다.

2. 독일의 시범모델

전자감시는 피선고자의 발에 손목시계크기의 송신기를 부착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 피선고자가 목적된 시간에 실제로 거주지에 머물러 있는지를 피선고자의 집 전화에 설치되어있는 수신기에 전달하고 전화선을 통해서 중앙컴퓨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략 한시간 간격으로 감시된다. 따라서 그가 집에 있어야할 시간에 거주지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직장이나 직업학교, 치료 등을 받아야하는 시간에 집을 떠나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이처럼 전자감시가 소위 정해진 일과에만 관련된다면, 모든 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자감시는 단지 감시의 성과만을 약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감시 초기에 피선고자와 판사 그리고 보호관찰관 사이에 이러한 체류시간 및 자유시간의 “계약(Vertrag)”을 하고 그와 함께 피선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모든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계획의 정확한 업무를 통해 두 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피선고자는 규율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규칙적인 생활(Leben nach der Uhr)”을 배운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많은 피선고자들에게 습관되어있지 않지만, 이러한 규칙성은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포기될 수 없다.

② 피선고자는 교도소 밖에서 상당히 밀착·통제를 받는다. 만약 예를 들어 밤에 피선고자가 전자감시를 빠져나간다면, 송신기를 통해 중앙컴퓨터에 그것이 즉시 기록된다. 중앙컴퓨터의 감시자는 곧바로 근무하는 보호관찰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한다. 담당

자는 곧바로 피선거자와 접촉을 해서 무슨 일인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곧바로 판결되어서는 안되고, 중요한 사례에서만 보호관찰부 형중지의 취소로 이어지고, 중한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경고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Hessen州 Wagner법무장관은 전자감시의 대체로 보다 원활한 감시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보호관찰의 취소를 가져오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Wagner는 전자감시를 일반적인 형벌집행을 위한 대체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형벌이 필요한 사람까지 자신의 “안방술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범모델을 위한 비용은 2년간 모든 물적 그리고 인적 비용으로 780,000DM정도 예상하고 있다. 3명의 담당자와 한 명의 프로그래머니저도 시범모델에 동참하게 된다.

가. 법적근거

Hessen州의 시범모델은 전자감시가 현행법 하에서 4가지 사례에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부 형집행정지에 따른 지시로서
- 잔형 중지의 범주에서 지시로서
- 행장감독 안에서 지시로서
- 미결구금의 집행중지에서의 지시로서

이것은 독일형법 제56조 이하(보호관찰지시), 제68조 이하(행장감독)와 독일형사소송법 제116조(미결구금)에 따라 법개정 없이

가능하다.

Hessen州의 시범모델 이외에 전자감시의 대체는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방상원의 입법안(BR-Dr.698/97)이 전자감시를 대체형벌로서 대체될 수 있도록 독일행형법 11조a의 개정을 위해 상정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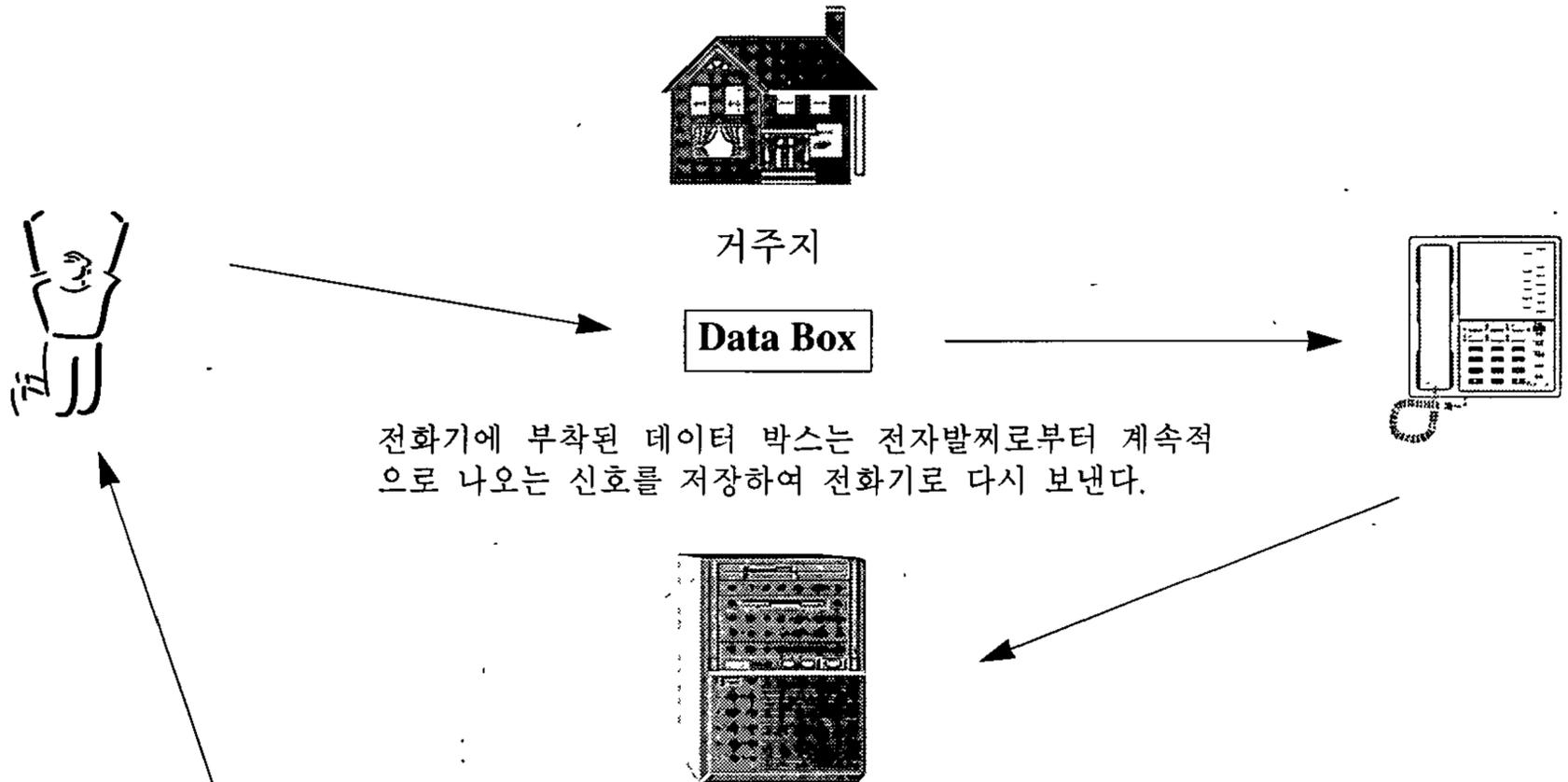
나. 기술

Hessen州의 시범모델을 위한 기술적 장비 공급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Elmo Tech회사에 의해 지원되었다. 그 회사의 전자감시시스템은 이미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30벌의 전자감시장비, 데이터박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위한 비용으로 370,000DM이 전체적인 시범기간인 2년 동안에 소요될 예정이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전자감시에 대한 독일의 관점에 국한된 것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에는 항상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5월과 1999년 10월에 메스컴을 통해 논란의 가능성이 보여졌으나,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그 내용의 검토 및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찬·반논쟁은 차지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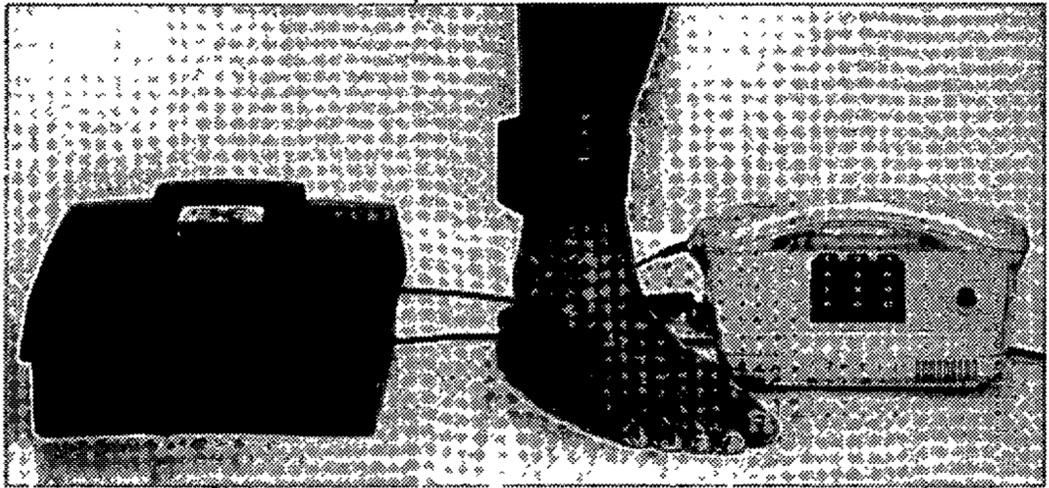
“전자발찌”의 운영과정



전화기에 부착된 데이터 박스는 전자발찌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호를 저장하여 전화기로 다시 보낸다.

감시소에 있는 중앙컴퓨터는 데이터박스에서 전화선(기)을 통해 보내온 자료를 저장하여 본래의 지시사항과 일치여부를(즉 대상자가 집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머물러 있지 않은지) 검토한다.

전자감시담당자(예를 들어 보호관찰관)
 전자감시담당자는 중앙컴퓨터에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감시 대상자를 전화로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접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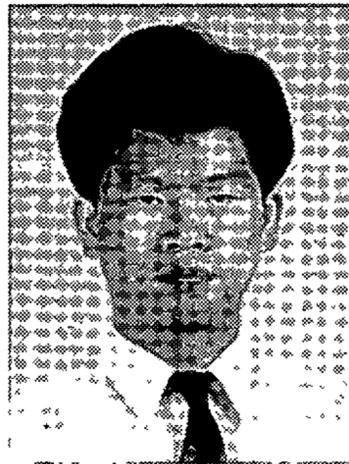


독일에서 사용하는 전자감시장비(전자감시 대상자의 발목에 착용하는 발신기와 전화기에 설치되는 수신기)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1. 들어가는 말

우리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년인 경우에 성인에 비하여 형벌 자체를 완화하고 아울러 형사절차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한 보호처분이라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이를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으로 하여금 소년심판절차를 거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대상을 범죄소년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범죄소년과 달리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까지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행위시 연령이 14세 이상인가, 14세 미만인가에 따라 구별되고, 우범소년은 아예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둘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리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으로 구별되고 있지만, 소년심판절차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도 동일하고, 보호처분



최 병 각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소년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는 통로에 있어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 있는 반면 범죄소년은 반드시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소년법은 소년심판의 대상을 비행사실과 연령범위의 두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보

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행위시가 아닌 소년법원의 종국결정시를 소년연령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사건처리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2세 미만일 때 저지른 비행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20세 미만일 때의 범죄로 형벌을 받을 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소년심판대상의 연령범위와 그 기준시점에 관한 현행 소년법의 규정을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 다음, 소년보호이념에 비추어 문제점을 부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소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소년심판대상의 연령하한

소년법은 제2조에서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연령의 상한이 20세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소년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의 소년,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은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법은 소년심판대상의 연령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과 하한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범죄소년을 “죄를 범한 소년”으로, 촉법소년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한 점과 형법 제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점에 비추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행위시 연령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위시 연령이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이고,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다.¹⁾

따라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행위시 14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판명되는 경우 이미 14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소년이 아니라 촉법소년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 또는 형사법원도 촉법사실을 토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소년이든 촉법소년이든 소년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다음에는 소년심판을 거쳐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심리중에 20세 이상으로 되더라도 소년법원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이 “14세 미만일 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고 할 때 촉법소년의 연령하한 12세의 기준시점도 행위시가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이는 12세 미만일 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촉법소년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우범소년의 경우에도 하한연령이 12세인데, 그 기준시점을 정함에 있어 “행위시”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체적인 우범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우범소년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을 함부로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아 인권보장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12세 미만일 때의 행위나 성벽을 이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소년·비송, 1986, 244면, 246면; 오행남,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의 연구”,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798면. 이는 일본소년법의 경우도 동일하다. 田宮裕(編), 少年法: 條文解説, 有斐閣, 1986, 43면.

2) 우리나라는 1963년 소년법 개정시 우범사유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1948년 소년법부터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일본소년법에서도 우범사유는 인권보장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田宮裕(編), 少年法: 條文解説, 46면.

유로 소년심판에 부치거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 소년법은 소년심판대상, 특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하한을 12세로 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8조 제2항에서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의 집행이 계속되는 중 대상자가 보호처분결정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되면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년심판규칙도 제42조에서 소년법원은 심리하는 중 대상자가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되면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심판에 있어서 대상자가 12세 이상일 것이 심리와 보호처분의 조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소년법원은 심리개시결정 이전에 대상자가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라면 당연히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진 다음에는 비록 12세 미만일 때 심리를 개시했다라도 보호처분이 12세 이상이 된 다음에 부과되었다면 그 보호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집행된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12세 미만의 자를 일단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12세 이상이 되기를 기다려 보호처분을 부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고, 더욱이 보호처분을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후견적·교육적·복지적 조치로 이해하면 그다지 문제될 것도 없다. 그렇지만 입법자가 굳이 소년심판대상의 연령하한을 규정한 취지

를 살리자면 그 기준시점을 행위시, 적어도 심리개시결정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소년심판대상의 연령상한

소년심판절차에서 소년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중 대상자가 20세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법 제7조 제2항)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법 제51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의 집행이 계속되는 중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당시 대상자가 20세 이상이었던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법 제38조 제1항 제1호)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법 제38조 제1항 제2호)해야 한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려면 줄곧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 다시 말해서 아무리 행위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다라도 심리중에 성인이 되어버리면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미 내려졌던 보호처분도 취소해야 한다. 결국 소년심판대상의 연령상한의 기준시점은 소년법원의 종국결정시라는 것이다.

소년법이 소년심판의 대상을 종국결정시 기준 20세 미만의 자로 한 것은 보호처분이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처우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보호처분은 소년의 특성,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성행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고, 따라

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243면.

서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자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근본취지에 모순되거나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소년심판대상의 연령상한을 행위시
가 아니라 종국결정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년심판
절차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20세에 근접하고
있는 경우에 사건처리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이라는 우연적 사실에 따라 최종결과가 엄청
나게 달라질 수 있다.⁵⁾

무엇보다도 처리기간이 짧았다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을 사건이 처리기간이 길
어져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상자로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처리기
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형벌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절차의 진행중에 성인이
되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여러
모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항고심에서 대
상자가 성인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처분부당
의 근거로 삼아 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원결정을 취
소하고 사건을 소년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소년법원이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하거나 형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가 여부
등이 항고심의 구조 및 항고권의 보장과 관
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⁶⁾

그리고,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 또는 소
년법원으로서의 사실상 사건의 성격이나 내
용이 아니라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기준삼아
처리절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⁷⁾

이로 말미암아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예
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생각건대 보호처분은 원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수단으로서 성인에게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에 따르
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부과된 다음에 그
소년이 성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 보호처분의 기
간(법 제33조)이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 집행되
는 중에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법 제37
조)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에게 새로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보호관찰(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1항 제3
호)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준수

4) 소년법 제3차 개정과정에서도 소년의 연령상한의 기준시점을 행위시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보호 처분의 성질을 이유로 재판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정동기,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 법무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1989, 268면.

5)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676면 ; 나채규, "소년법상 보호처분 활성화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1990, 175면.

6) 상세히는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224-226면.

7) 일본의 경우 소년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대상자가 20세 이상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일본소년법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 3개월내에 성인이 될 소년사건은 경찰에 의한 간이송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關力(編),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 1991, 84면.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은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이 경우 신청대상자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따라서 이미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범죄소년이 종국결정시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절차로 보냄으로써 아예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연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소년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더라도 이것이 소년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저지른 것으로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범죄행위에 나타난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 범죄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소년이 철이 없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응보와 일반예방의 요소가 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범죄소년이 절차의 진행중에 20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년법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에 비추어 범죄소년의 경우에 형벌 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

리 소년법이 검사선의주의를 채택·유지함에 따라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절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소년사법의 실무에서 소년사건을 보호사건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⁸⁾ 이에 더하여 소년심판대상의 연령상한을 소년법원의 종국결정시로 함으로써 20세에 근접하는 범죄소년은 소년법원에 송치하더라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많고, 때문에 이 경우 처음부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벌위주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소년심판대상의 연령상한에 대한 판단시점을 종국결정시가 아니라 행위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시 소년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20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이미 성인이 된 자를 소년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심판대상으로 심리가 개시될 때 소년이기만 하면 종국결정시 성인이 되더라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8) 법원행정처, 기타의 사법제도: 소년사건처리절차개방안, 사법정책자료, 제9집, 1992, 309-318면.

즉,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①범죄행위시 20세 미만이고 또한 ②심리개시결정시에도 20세 미만이면 ③심리개시후 20세 이상으로 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①범죄행위시 20세 미만이라도 ②심리개시 이전에 20세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①촉범행위시 12세 미만이거나 통고 또는 송치된 우범소년이 12세 미만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 하고, ②심리개시 이후에 20세 미만이지만 하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③심리개시 이후에 20세 이상으로 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고 불처분결정으로 종결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현행 소년법의 기본적인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 소년법 제7조 제2항과 제51조의 “20세 이상” 앞에 “심리개시결정 당시”를 삽입하고,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의 “처분당시”를 “심리개시결정 당시”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소년법	소년법 개정안
<p>제7조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u>심리개시결정 당시</u>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8조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u>심리개시결정 당시</u>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심리개시결정 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51조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p>	<p>제51조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u>심리개시결정 당시</u>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p>

사형(死刑)은 폐지대상이 아니다.

1. 사형폐지 움직임

2000년 8월 15일자 동아 일보는 [횡설수설]란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에서 사형수 2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조치를 대통령이 사형의 '사실상 폐지'를 결심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단 한 명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김대통령이

사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지만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되 집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안이 여야공동으로 국회에 제출(2000년 7월 24일)되어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특별법안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새천년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 중범죄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다소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형은 비인도·윤리적인 형벌로, 특히 한번 잘못 집행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



조 병 인

(연구위원, 법학박사)

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명의 천부적 성격을 역설한다. 인간의 생명은 조물주가 내려준 것이어서 신(神)·이외에는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형의 자기모순성을 지적한다. 살인의 대가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야만적 행위에 야만적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되어 옳

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형과 범죄 발생률의 무관성을 지적한다. 사형을 폐지한 후에 오히려 범죄발생건수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고, 사형이 있는 국가가 사형이 없는 국가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 살인범을 사형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살인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살인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법관의 착오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경우의 회복불가능성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사형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유능한 백성이 반역의 누명을 쓰고 사형

에 처해진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섯 번째로는 사형집행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막의 뒤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고뇌와 번민도 생각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처형에 따른 고아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2. 국제사회의 동향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66년에 채택된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생명권의 천부성(天賦性)을 천명하고 있다. 사형폐지운동은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내놓은 뒤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4년에 채택된 '사형수의 권리보장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결의문'은 극악무도한 범죄(고의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85년에 채택된 '유럽인권협정(제6의정서)'은 평화시에는 사형을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은 지속적인 사형연구를 통해 사형폐지운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적 인권 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1989년부터 '사형없는 세계를 향하여'를 외치며 사형폐지운동에 가속을 붙이려고 노력한다.

개별 국가의 상황을 보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경우·사형을 존치하되 처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전쟁시에만 사형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그대로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경우·처형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등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사형폐지론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다. 사형범죄의 범위를 특수범죄(5-6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16개국)까지 포함하면 사형폐지론의 우세가 한층 분명해진다. 사형을 후진국(권위주의 국가, 독재국가)의 형벌로 간주하는 경향은 갈수록 사형폐지론의 입지를 넓혀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들어서도 6월에 러시아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없애는 등 해마다 2개국 정도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백 6개국으로 사형 존치국가(89개국)보다 많다. 이들 1백 6개국 중 14개국은 군법이나 전시(戰時) 등에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개국은 사형제도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1999년 11월에 EU국가들이 유엔에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을 제출하자 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각국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적도 있다. 미국은 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4년 만에 부활시켰으며, 현재 38개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의 부활 이후 처형된 사람이 600여명에 이른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2000년 들어서만 100명 이상이 처형되는 등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죄질이 나쁠 경우 미성년자까지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여서 국제사면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3. 사형폐지 반대의 논거

하지만, 사형의 불가피성을 믿는 입장에서는 사형폐지론의 논거와 현실적인 폐지노력들이 감상적 사고에 기초한 소박한 억지로 여겨질 뿐이다. 첫째는, 사법정의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의 원한을 확실히 풀어주는 데 있고, 피살자와 유족의 원한을 확실히 풀어주는 데는 사형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것을 위임해 준 국민의 보복감정을 해소해 줄 의무를 가질 뿐,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범죄자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당한 자의 입장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셋째는, 사형의 억제효과가 검증된 적도 없지만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적도 없다.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는 민간요법으로 제조한 보신약품의 약효와 비슷한 것이므로 존치와 폐지

어느 쪽의 논거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밖에,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절차 보완과 감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사형집행관의 입장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상의 이유로 사형폐지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신 오판과 악용 및 남용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사회적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응보의 수단으로는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낫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적다고 여겨진다.

범죄의 대가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해마다 2천여명, 하루 평균 6명이 처형되고 있음은 인류역사의 비극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에도 불구하고, 처형되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한 말없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원한을 달래줄 대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형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취임 이래 무려 14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텍사스는 '사형집행의 수도'라는 악명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사형제도를 옹호한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마당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흉악범죄를 증오하는 다수 유권자의 심정적 정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2000년 3월 16일에는 파키스탄 라호르 법원이 어린이 100여명을 살해한 자베드 이크발(42)에 대해 공개 사형을 선고했다. 알라마크슈란자 판사는 이크발을 피해자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고, 몸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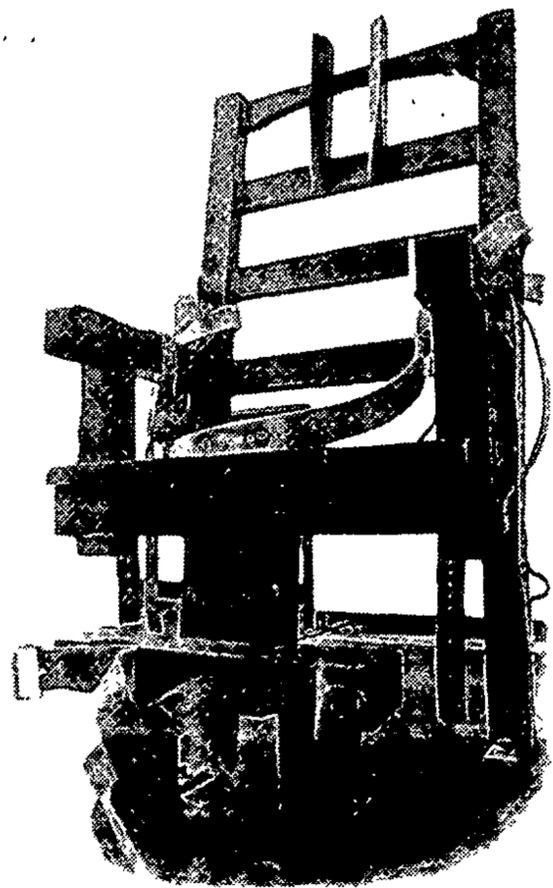
조각으로 나누어 그가 저지른 범죄수법과 같이 산(acid)용액에 넣어 없애라고 판결했다. '이슬람 율법' 식의 파키스탄 사상 최고 극형이 선고되는 동안, 주범 이크발과 공범인 10대 소년 3명은 미소를 보였다. 이크발은 증거 인멸죄로 징역 700년형이 추가 선고됐고, 대부분이 '거리의 소년들'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던 10대 2명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진행된 2개월여동안 법정 밖에서는 '극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시위가 계속됐다.

우리의 선조들은 사형의 응보적 기능 뿐 아니라, 범죄억제효과까지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 사형의 역사는 일벌백계를 겨냥한 참혹한 공개처형으로 얼룩져 있다. 이 조시대의 경우 역적 등 중범은 임문정형(臨門正刑)이라 하여 남대문 다락에서 임금이 곡직(曲直)을 가려 문전에서 처형했다. 갑신정변때 궁중에 잠입하여 폭탄테러를 기도한 이우석이라는 여성은 정변 실패 후에 종로바닥에서 공개리에 할퀴고 뜯긴 끝에 수구문 밖에서 민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석살(石殺)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범은 처형후 그 잘린 머리를 들개가 뛰어 이르지 못하는 높이로 매달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효수(梟首)하여 공개하였다. 처형한 다음 시체를 여섯 토막내어 정해진 팔도 코스를 따라 끌고 다니며 백성한테 보임으로써 경고효과를 거두는 능지처참 또는 육시형도 있었다.

심지어는 팽형(烹刑)이라고 일컬어지는 형식적인 공개처형도 있었다. 주로 부정부패로 원한을 산 벼슬아치를 종로 복판이나 복청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시늉을 하여 백성의 분노를 삭혀주는 것으로, 팽형에 처해진 죄인은 실제로 초상이 치루어졌고, 살았어도 죽은 자로 취급되어 아이를 낳아도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다.

생각건대, (그것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는 공기중의 '산소(酸素)와 같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인간의 훈육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개선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폐지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마치 공기중의 산소가 정화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제거의 대상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공창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 들어가며

요즈음은 인터넷의 일반화가 되면서 모든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음란물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어디 그뿐이라 종래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던 매춘행위가 이제는 대문을 나서면 멀지않은 곳에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이제는 국제화된 경쟁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향락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모 지역경찰서장이 미성년자 매매춘을 근절하겠다고 공식선언하면서 사활을 건 윤락업자들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지만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든 행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매춘현황은 어떠하며 요즈음의 일련의 성의 개방화와 더불어 기승을 부리는 매매춘의 확장성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창제도의 필요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배현정

(사법연수생)

매춘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듯하다. 성경에서도 라합이라는 창녀가 등장하며 여러 곳에서 창녀의 용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매매춘의 역사는 100년 남짓에 불과하다. 물론 가부장제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성을 매개로 한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반들의 술시중을 들던 창기들이나 사당패라

불리는 유녀들이 매음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삼은 창기가 등장한 것은 1876년 개항이후,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일본이 자기나라의 매매춘업을 조선에 옮겨놓기 시작한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더욱 늘어난 일본인 도래자 가운데 대좌부업(貸座敷業), 석대업(席貸業), 대합(待合)특별요리점업 등을 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매매춘업자들이었다. 창녀들을 일정한 구역안에 집결시키고 나라가 이를 용인한 공창(公娼)인 유곽(遊廓)은 1900년 부산 부평동의 이른바 '지옥골목'에 처음 등장했다.

1차세계대전 이후의 불황기에 빠져든 20년대 초반,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자의 일부

2. 한국 매춘의 현주소

가. 해방 이전의 현황

가 매춘에 뛰어듦에 따라 공창은 시들해지는 대신 도처에 사창이 번성했다. 이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창에서는 손님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러시아혁명으로 쫓겨온 백인 여성들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여 이들 러시아 여인은 요즈음 떠들썩하는 소위 '인터걸'의 원조격이다.

나. 해방 이후의 상황

사창이 번창해지고 악덕 포주의 착취와 학대에 대한 인권문제와 성병의 창궐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독교단체와 근우회 같은 여성운동단체 등은 3·1운동 이후부터 꾸준한 공창폐지운동을 통하여 1948. 2. 14. '공창제도등폐지령'이 발효되어 제도로서의 공창제도는 사라졌으나, 매매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53년 휴전 직후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부터 기지촌은 매매춘의 이방지대가 되었다. 1961년 군사구테타 이후 '윤락행위방지법'을 공포하고 윤락행위를 제도적인 위법으로 간주한 군사정권은 한편으로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술집에 면세혜택을 주는 등 기지촌 육성 정책을 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 1980년대 이후의 상황

1970년대 후반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생집 방문은 거의 모든 한국관광의 코스로 끼여 있었고 실제로 외국의 남자(대개는 일본인)들은 그런 목적 때문에 한국을 관광했

다. 마치 요즈음의 한국인 중 일부가 동남아 관광 중 일정 목적을 가지고 가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향락산업이 팽창하면서 매매춘의 목적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것에서 쾌락과 쉬운 돈벌이를 찾는 '자발적'인 참여형태로 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변화 내지는 혼란의 한 표출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인간이기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성(理性)'마저도 스스로 포기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공창의 필요성

'윤락행위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매춘업이란 우리나라에 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고있으나 공간적·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매춘업을 그대로 자율성에 맡기어 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매매춘을 하는 여성이 견해에 따라 12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니 이 숫자는 15세-29세 사이의 여성 전체인구 800만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대안으로 공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가. 반대하는 입장

매매춘을 하는 행위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이므로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공창이든 사창이든 모두 강력한 법적 조

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견해에서 공창제도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미 불법인 사창이 만연되어 있는데 다시 공창을 만든다고 하여 기존의 사창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적 견해가 있다.

나. 찬성하는 입장

국가에서 공창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공창제도만 잘 관리하면 되므로 미성년자들이 매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공창 이외에 사창을 엄격히 단속하여 일반화되고 만연화된 매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 공창에서 종사자하는 자들에 대한 심적 위안(합법이므로)의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검토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의 효율성 내지는 성취도는 그 이론적 근거의 명확성과 그에 따르는 현실적응성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느 입장이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진 명쾌한 대처방안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사회라고들 한다. 그 하나로 드는 것이 모든 규제가 점점 풀리고 시민들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자율성을 주더라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개개인의 민주시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민주화된 사회라도 자율

에 맡겨서는 안될 한계도 있는 것이다.

매매춘의 경우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모두 불법화한다는 것은 '있어도 없는' 모순의 실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인정해주되 확산되어 가고있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창'을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사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한다면 자율에 맡기기에는 위험한 매매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물론 '공창'은 과거의 공창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공창이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얼마전 정부 관계장관이 대충매체의 방송 프로그램 중 선량한 성풍속에 위반되는 각종 음란성, 폭력성을 띤 것은 방영을 강력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접했다. 민주사회에서의 '작은정부'란 할 일 없이 손놓고 앉아있으라는 것은 필경 아닐 것이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인내를 가지면서 기다려 주다가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조그맣게 뚫린 구멍을 막을 때 '국가'라는 커다란 배가 끝까지 안전하게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의 확대 적용 - 독일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

원혜욱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2000년 1월 독일연방법무부는 대중매체 종사자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 및 업무상 知得하게 된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권¹⁾의 확대 적용과 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에 규정된 압수금지의 확대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 증언거부권자의 범위 확대

우선 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²⁾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자의 범위를 업무상 비정기(非定期) 출판물, 정보제공·전달을 준비, 제작 혹은 유포한(하는) 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전달업무가 보도 및 여론형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영상보도와 관련된 업무가 정보제공·전달업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영상보도자에게도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영상보도 역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명백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업무상 대중매체물을 준비, 제작, 유포해야만 하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추상의 결함은 당연히 제거되어

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시기에 업무와 관련 없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전달업무에 참여한(하는) 자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 등에 대한 증언거부권

대중매체 종사자의 증언거부권을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메모, 영상자료, 사진 등)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知得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의 확대적용을 위해 개정안은 신문, 라디오 및 영상의 자유에 대한 장래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대중매체에 대한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제5조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장래의 부당한 침해는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가 압수되는 시기에 이미 비난될 수 있는 침해유형이다.

현행법³⁾은 대중매체 종사자가 편집한 부분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기고, 보고 및 전달한 자료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언거부권을 인

1) 증언거부권이란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독일형사소송법 제53조 1항 5호 2문은 정기적인 출판물 혹은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을 업무상 준비, 제작 혹은 유포(하는)자를 증언거부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53조 1항 5호 2문: 전신업무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항.

정함으로써 편집을 담당한 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그가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 즉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기고, 보고 및 전달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어린이포르노그래피, 인종차별과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익명으로 대중매체영역에 유포되는 경우에 편집자는 그가 편집작업을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극단적인 내용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여 대중매체 종사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유포시킨 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3. 증언거부권과 압수금지에 대한 예외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와 업무상 知得하게 된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권 및 이에 상응하는 압수금지는 형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⁴⁾를 해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는 해명되어야 하는 범죄의 중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소추이익이 개인의 증언거부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이다. 또한 증언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양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⁵⁾에 규정된 판결을 위해 중요하다면 범죄해명을 위한 증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에 대한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 개정안은 제53조 제2항에 다시 다음의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였다:

자신이 작업한 보도자료의 내용 혹은 자신이 조사하여 知得하게 된 사실이 범죄해명과 관련될지라도 그에 대한 공표가 정보제공자의 동일성 혹은 제공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표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언은 강제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제공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언내용이 기본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문, 라디오 및 영상에 대한 자유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증언이 사건의 중요성과 관련이 없다면 증언을 강제할 수 없다. 이는 「비례성원칙」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또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한 증언만을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압수금지의 확대적용

대중매체 종사자에 대한 증언거부권의 확대적용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 제1문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안은 제97조 제5항 제2문에 비례성원칙에 근거하여 증언거부권자가 범죄에 관여하였거나, 범죄은폐, 범인은닉의 혐의가 있거나 혹은 범죄에 연루된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기본권과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이익을 비교하여 기본권이 우선하는 경우에 압수를 금지하였다.

4) 형법 제12조 1항에서 의미하는 범죄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5) 형소송법 제244조 2항 ∴ 법원은 그 직무상 신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판결에 중요한 모든 증거물과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97조 5항 1문은 형사소송법 제53조 1항 5호의 증언거부권과 상응하는 압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 피해자권리의 강화

박 철 현 (연구원, 범죄학박사)

캐나다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서 매우 선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전세
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피해
자 원조프로그램의 기원을 캐나다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보상
적 정의 프로그램이나 중앙정부차원의 노력
을 찾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서
는 최근의 캐나다 형법의 개정을 통해 나타
난 피해자 권리의 강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말 캐나다 형법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졌
다. 1999년 12월 1일자로 공포된 새로운 법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새
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0
년 8월 3일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향후 5년동안 2,500만 캐나다 달
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첫 해인 올해 1,0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충격진술(victim impact statement)을 준비하여 법정에서 큰소리로 낭독할 수 있다.
- 경찰과 판사는 모든 보석결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 판사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신원에 대한

누출을 금지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가해자에게 자동적으로 피해자추가벌금(victim surcharge)^{주)}을 부과하는데, 이 재원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이용된다.

이 중 피해자 충격진술이란 범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새로운 캐나다 형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것을 크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판사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반영하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석의 결정이나 재판의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을 더욱 완벽하게 보호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1988년부터 이루어진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확대하여 모든 피해자와 증인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동적으로 피해자추가벌금을 부과하여 지역단체가 피해자의 원조를 보다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 피해자추가벌금은 보통 선고된 벌금의 15%이며, 벌금부과의 대상이 아닌 경우, 즉결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50, 기소되어야 되는 중한 범죄는 \$100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200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추가벌금은 \$30이며, 가벼운 절도의 경우 \$50, 중폭행과 같은 범죄는 \$10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본 : 테레크라의 형사적 규제

정 완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서 언

일본을 발생지로 하는 이른바 원조교제가 국내에서도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이른바 '테레크라(テレクラ)'라는 영업이 성행하여 불법 매매춘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전화방, 휴게방 등을 통한 불법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지만 차제에 일본에서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테레크라 영업 및 그 형사적 규제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¹⁾

'테레크라'는 '텔레폰 클럽'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텔레폰 클럽' 외에 'two shot 다이얼', '전언(傳言)다이얼' 등으로도 불리운다. 따라서 테레크라를 정의하면, "전화기·교환기·녹음기 등의 기계를 전화회선에 연결하여, 불특정 이성간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들 간의 전언(傳言)을 중개하는 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테레크라 영업은 신풍속영업법이 시행된 1985년 신주쿠에서 개점한 것이 제1호로, 당초는 점포형의 테레크라가 주류였지만, 그 후 다이얼Q2를 이용한 two shot 다이얼, 다시 Q2이용 전언다이얼로 이행되어 왔다.

2. 테레크라의 유형

테레크라에는 점포를 갖춘 '점포형 텔레폰 클럽'과, 점포 없이 컴퓨터교환기로 중개하는 'two shot 다이얼'과 '전언(傳言)다이얼'의 세 종류가 있다.

1) 점포형 텔레폰클럽

남성이 텔레폰클럽에 입장료를 내고, 점포 내 전화가 비치된 방에 들어가, 여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전화방과 유사하다. 여성으로부터 전화(무료: 프리다이얼)가 오면 모든 객실의 전화가 울리며, 가장 빨리 수화기를 든 남자 손님과 연결되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two shot 다이얼

컴퓨터교환기에 의해, 무작위로 남성의 전화와 여성의 전화가 연결되어 대화하는 형태이다. 여성은 무료로 전화를 걸지만, 남성은 이용요금과 통화료를 지불해야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남성은 two shot 다이얼업자가 설치한 자판기에서 이용카드를 구입하거나, 업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의 납입 등을 통하여 인증번호를

1) 이하는 道谷卓, <http://w3.scan.or.jp/osaka/telekura/page01.html>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연은 후 교환기에 전화를 걸고 여성과 연결되기를 기다린다. 남성의 전화는 대화시간이 교환기에 기록되며, 이용카드 사용의 경우 이용가능한 대화시간이 관리된다.

이른바 '다이얼 Q2'²⁾가 규제되기 전에는 남성의 요금지불방법의 하나로 Q2를 이용한 two shot 다이얼이 많았는데, 이는 남성이 Q2의 이용요금과 통화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Q2이용 two shot은 1992년 2월 NTT³⁾가 업자와의 계약을 중지하고, 자주규제를 단행하였다.

3) 전언(傳言) 다이얼

컴퓨터교환기에 남성이 전화번호와 자기소개 등 이른바 전언(傳言)을 녹음한 후(유료), 전화를 끊고 여성의 전화를 기다리는 형태이다. 여성은 무료(프리다이얼)로 교환기에 접속한 후 남성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들면 남성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남성의 요금징수방법은 two shot 다이얼과 같다. 또한 Q2 규제 전에는 Q2이용 전언다이얼이 많았지만, 1993년 10월 NTT가 업자와의 계약을 중지하고, 자주규제를 하게 되었다.

3. 테레크라 규제의 실태

가. 테레크라의 문제점

테레크라의 공식적으로는 불특정남녀간에

대화의 기회를 알선하는 것이지만, 그 실태는 매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테레크라를 이용하는 남성의 대부분은 단순히 여성과의 대화만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여성에게 금전을 주고라도 최종적으로는 성적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이나 대합실 부근 등에서 흔히 배포되는 포켓 티슈에는 여성전용 무료전화(프리다이얼) 번호가 기재되어 미성년 여자도 공중전화나 자택 등에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단지 흥미 삼아 전화를 걸었다가 성적 피해를 당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쪽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테레크라에 전화거는 사례가 많다.

테레크라의 '점포형'의 경우 미성년 남자의 출입을 단속할 수 있지만, two shot 다이얼이나 전언다이얼은 미성년남자의 이용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초 다이얼 Q2를 이용하던 two shot 다이얼과 전언다이얼도 '매매춘 목적의 이용', '이용자의 저연령화'라는 사회로부터의 비판이 일자, NTT가 자주규제를 단행하여 이들 테레크라 업자와의 계약을 중지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테레크라 업자 측에서 선불카드와 은행납입 등을 통하여 일반회선을 이용하는 two shot 다이얼과 전언다이얼로 변경하였다. 여성이용자는 여성전용 무료전화(프리다이얼)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성년 여자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다이얼Q2'는 일본의 NTT가 제공하는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다이얼Q2'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3.scan.or.jp/osaka/daiyaru/whatq2.html>를 참조 바람.

3) NTT는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약자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를 말하며, 1985년에 설립되었고 도쿄에 본사가 있다. 198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해당하는 회사이다. <http://www.ntt.co.jp/about/index.html> 참조.

1985년 처음 개점한 테레크라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 '매매춘 목적의 이용', '저연령자의 이용', '성범죄의 위협성'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테레크라 영업은 풍속영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래 법적으로 무방비상태였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테레크라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나. 테레크라의 형사적 규제

테레크라는 풍속영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테레크라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 테레크라규제 조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형태⁴⁾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독립된 테레크라규제 조례를 제정하는 형태⁵⁾이다. 이들 두 형태의 차이는 전자가 지사(知事)의 소관인데 반하여, 후자는 공안위원회 소관이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중지명령을 발하거나 벽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오사카부의 테레크라규제 조례(1997.2.1 시행)를 예로 들어, 테레크라의 '조례에 의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부의 테레크라규제 조례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테레크라 영업에 의한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오사카부 테레크라 규제 조례의 정식명칭

은 '오사카부 텔레폰 클럽 등 영업의 규제에 관한 조례'이다. 1996년 11월 8일 공포되고, 1997년 2월 1일 시행된 전23조의 조례이다. 주요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례는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테레크라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연소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둘째, 오사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계발에 노력하고 또 시민은 테레크라로부터 연소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셋째, 테레크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사항의 변경과 영업의 폐지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넷째, 학교, 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주위 200미터 및 주거지역에서는 테레크라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two shot 다이얼이나 전연다이알 등과 같이 가게에 손님을 들이지 않고 또 가게에서 광고선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을 할 수 있다. 경과 조치로서, 현재 금지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게는 조례 시행된 2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제5조).

다섯째, 영업자는 연소자에게 테레크라 이

4) 기후현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5) 이시카와현, 이바라키현, 오사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을 권유하거나, 가게에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거나, 텔레폰 레이드의 업무와接客업무를 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영업자 또는 위탁업자는 연소자에게 테레크라 광고전단의 배포업무와 이용 권유업무를 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연소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죄를 면할 수 없다(제22조).

한편 누구든지 연소자에게 two shot 다이얼과 전언다이얼의 이용카드를 판매 또는 반포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를 취득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연소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죄를 면할 수 없다(제22조). 또한 누구든지 연소자에게 테레크라의 광고전단을 배포해서는 안되고, 누구에 대하여도 학교 주위 200미터 이내에서는 테레크라 광고전단을 배포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4. 결 어

테레크라규제 조례의 목적은 테레크라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성의 매매 목적의 이용, 저연령층의 이용, 성범죄의 위험성(소녀의 성적 피해), 테레크라에 의한 소녀매춘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청소년의 보호라는 이념을 고려하면, 테레크라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비록 테레크라를 규제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피해', '매춘' 등의 문제는 다시 형태를 바꾸어 현재의 법적 규제를 벗어나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조례의 제정에 그치지 말고, 청소년의 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5년 기후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역(각 도도부현)에서 현재 테레크라규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방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상태이고 보면, 가칭 '테레크라'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본의 규제방안을 잘 분석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은 같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또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흔히 전국적으로 효과를 갖는 형사처벌규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하려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후에 이를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각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한 신속한 규제가 우리에게도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⁶⁾

6)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의 조례제정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또 동 법률들이 위임하는 구체적 범위 내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임웅, 형법총론(법문사, 1999), 19쪽 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식

2000년도 상반기 심사분석

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2일 (화) 12층 직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심사분석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수립된 연구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그 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과정과 달성도를 점검하여 우수한 부분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내용은 크게 연구분야, 경영분야, 고객지향, 종합평가 등 4개분야로 실시하였으며, 각분야의 특성에 맞게 세부항목으로 심사분석을 하였다. 향후 심사분석을 바탕으로 우수한 분야는 격려하고 미진한 분야에서는 개선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반성과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회는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최인섭 연구부장이 직접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검찰 정기 인사이동

검찰의 정기인사 이동이 7월 26일자로 실시되어 연구원에 파견근무를 하였던 신배식 초빙연구위원(부장검사)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4부장으로, 김경수 초빙연구위원(부장검사)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임하였다.

신배식 형사부장과 김경수 지청장은 연구원 재직시 연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규개정 및 연구업무 수행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후임으로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조은석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광준 검사가 초빙연구위원으로 부임하였다.

사이버범죄연구회 구성 운영

연구원은 「사이버범죄연구회」를 구성하여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전에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고, 미국·유럽·일본 및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 관련 자료 중 회원간에 상호 유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번역·소개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구방향·방법에 관하여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관하여 보다 유용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한편 사이버범죄연구회의 동정과 발표자료는 연구원 소식지에 게재하여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범죄연구회 구성은 회장에 연성진 특수범죄연구실장, 간사는 정완 선임연구원, 총무에는 백광훈 연구원, 회원으로 원혜욱, 이민식, 김혜정, 탁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있는 연구원들도 향후 가입하여 함께 연구할 수 있다.

● 도서회원제 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폭넓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 구분 및 연회비

- 일반 : 40,000원(99년 연구보고서 중 10종)
- 기관 : 70,000원(99년 연구보고서 중 20종)
- (※ 1999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참조)

2.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송부 및 회비를 은행에 납부

3. 회비납부

- 지로구좌 7528145(형사정책연구원)
- 국민은행 814-25-0002-582(형사정책연구원)

4. 회원에 대한 특전

- 형사정책연구(계간), 형사정책연구소식(격월간), 세미나자료집 무상으로 우송
- 연구원 도서실의 자료열람 이용
- 세미나 초청
- 기발행된 연구보고서 10부 이상 구입시 30% 할인

5. 가입문의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전화 : 02-571-0363 팩스 : 02-571-7488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c.re.kr

1999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 교도소내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청소년범죄 연구동향
 - 야생동물 밀렵의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
 -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 국제형사법원설립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영상매체의 활용
 - 미국의 사범방해죄에 관한 연구
 -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1985-1998
 -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 범죄신고자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1966-1998
 - 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
 -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 ※ 회원가입 신청서 및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송하여 드립니다.

● 형사정책 논문 공모 ●

1. 자격
 - 관련분야(형사법학, 범죄학, 교정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정보호 등 형사사법분야 종사자
2. 논문분량 : -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A⁴용지 40자 28행 150매 내외)
3. 시상 : - 우수작 1편 상금 300만원 및 상패
- 가작 1편 상금 200만원 및 상패
4. 심사방법 및 발표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결과를 10월중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통지함
5.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2000년 8월 30일까지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원고화일은 E-mail 또는 디스켓 첨부)
6. 선정자 특전
 - 당선된 논문은 단행본 출판 또는 「형사정책연구」지 게재
 - 연구원 연구직 채용시 우선 고려

※ 선정된 논문에 대한 출판 권한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 02-575-5285 팩스 :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 형사정책연구소식 원고 기고 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형사정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지를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내용 :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범죄문제 등에 관한 논단, 제언, 번역자료 등

응모자격 : 1. 형사정책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자

2. 형사사법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연구경력자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30 - 40매 내외(PC에 경우 A⁴용지 80칼럼 25행으로 6-7매 정도)

원고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지급

(단, 연구원 간행물출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원고에 한함)

참고사항 : · 소식지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이한 수준

· 원고는 PC(아래아한글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송부(E-Mail 송부 가능)

·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상반신 사진 1매 제출

보내실 곳 :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전화 02-571-0363 팩스 02-571-7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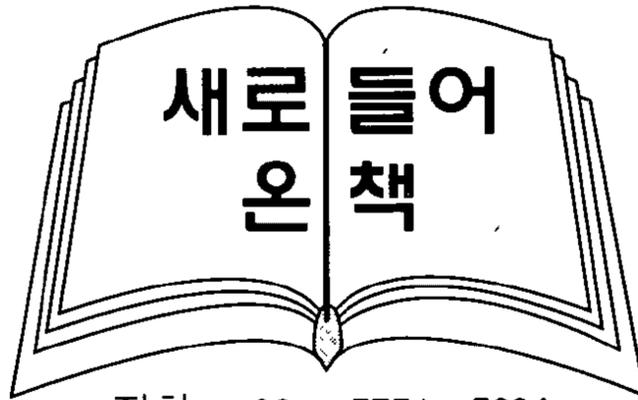
E-mail : kneky@kic.re.kr

□ 일본

- 警察學論集
- 犯罪社會學研究
- 犯罪學雜紙
- 法律時報
- 法律判例文獻情報
- 法社會學
- 外國の立法
- ジュリスト
- 判例時報
- 刑法雜紙

□ 영미

-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Annual review of sociology
-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 Canadian journal of law & society
- Contemporary sociology
- Crime and delinquency
- Crime and justice
- Crime, law and social change
- Criminal justice abstracts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 Criminal law quarterly



전화 : 02 - 575 - 5284

팩스 : 02 - 571 - 7488

www.kic.re.kr

- Criminology
- Current contents
- Deviant behavior
-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 Federal probation
- Harvard law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 applied criminal justice

-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 Justice quarterly
- Law and society review
- Michigan law review
- Social forces
- Social problems
- Social research
-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 Sociological quarterly
- Sociology
- Theoretical criminology
- Violence and victims

□ 독일

- Bew hrungshilfe
- Deutsche Richterzeitung

-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 Juristenzeitung
- Juristische Ausbildung
- Juristische Rundschau
- Juristische Schulung
-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 Kriminalistik
- Kriminologisches Journal
- Kritische Justiz
-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reform
-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 Neue Justiz
-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 Recht und Politik
-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 Wistra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 Zeitschrift für Strafvollzug und Straffhilfen

단행본

-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김일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大衆音樂에 心醉한 靑少年들의 心理的 特性, 김인경, 集文堂, 1998.
- Crime victims in context / Kennedy, Leslie W. - Los Angeles : Roxbury Publishing, 1998.
- Crime victims :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 Karmen, Andrew - Belmont : Wadsworth Publishing, 1995.

- Fear of judging :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federal courts / Stith, Kate - Chicago ;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Principled sentencing : readings on theory and policy / Von Hirsch, Andrew, - Oxford : Hart Pub., 1998.
- 知的財産權法講義, 정상조, 弘文社, 1997.
- 知的財産權法, 황의창, 신영출판사, 1998.
- 知的財産權法, 윤선희, 세창출판사, 1999.
- 知的財産權法概論, 김관형, 경문사, 2000.
- 知的所有權法, 송영식, 育法社, 1999.
- 기업비밀 보호전략 : 김종길, 용수출판, 1997.
- 不正競爭防止法, 정호열, 三花院, 1996.
- 刑事訴訟實務便覽, 정태원, 法院公報社, 2000.
- 한국 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2000.
- Straßenkinder in Deutschland Eine Herausforderung für die Pädagogik / Pfenning, Gabriele - Hamburg : Universität zu Köln, 1995.
- 死亡原因統計年報:人口動態申告에 의한 集計, 대한통계협회, 통계청, 2000.
- 行政法原論, 홍정선, 博英社, 2000.
- 行政法 II, 김남진, 法文社, 2000.
- 轉換期의 行政法理論, 서원우, 博英社, 1997.
- 經濟法 : 公正去來法, 消保法, 約款法, 割賦去來法, 訪販法 / 이남기, 博英社, 1999.
- 聯合年鑑, 연합통신, 聯合通信, 1996-1998, 2000.
- 法務總合研究所 研究部報告, 법무총합연구소, 2000.
- 스톡킹, 알고나면 두렵지않다, 그로스, 린덴, 문학사상사, 1999.
- 靑少年白書 : 靑少年問題의 現況と對策, 總

- 務廳 靑少年對策本部, 2000.
- 警察白書, 경찰청, 1999.
- 司法年鑑,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1988-2000.
- 韓國靑少年文化 : 心理, 社會的 形成要因,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韓國靑少年文化 : 變化와 連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 韓國靑少年文化 : 比較文化的 分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 靑少年文化的 變遷過程,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 靑少年文化的 實態와 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法文社, 2000.
-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2000.
- 矯正研究, 韓國矯正學會, 2000.
- 신지식 靑少年 육성을 위한 간행물의 역할 : 靑少年 마니아 문화와 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9.

- 고졸 靑少年 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靑少年개발원, 1999.
- 靑少年 정보화 실태와 새로운 정책의 방향 : 靑少年 정보의식 함양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한국靑少年개발원, 1999.
- 저소득 실업가정의 靑少年 문제와 대책, 한국靑少年개발원, 1999.
- 靑少年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 가족상담 기법연구 III,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 소년의 수월성 개발 및 촉진을 위한 한 연구,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 학교상담 실태 및 모형 개발연구,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 靑少年 사이버상담의 발전모형,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 또래상담 운영방안 연구, 한국靑少年상담원, 1999.

통권 제59호(2000년 5/6월호) 현상퀴즈 당첨자 및 정답

총 42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24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첨자>

-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45 김원철
-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992-3 김은식
- 진주시 상대동 294-5 원선미
- 광주시 서구 화정 3동 366-1 노수정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상품권)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남	북	정	상	회	담	
방	곡		극		전		금	수
주		발	성	법		기	질	
사	거	리		치	명	상		지
	북		사	주		청	교	도
사	이	비		의	혹		외	
령		만	수		독	립	선	언
부	표		송	신		싱		약
	적	외	선		아	크	릴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의 총칭

<세로열쇠>

2. 산에서 물에서 싸웠다는 고사성어
3. 죄인의 발목을 묶는 쇠사슬
4. 서로 만남(이산가족○○)
5. 남과 북이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를 설치하려고 하죠
8. 패션쇼에서 옷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걸어다니는 사람
9. 즐기차게 내리는 많은 양의 비
10. 옮겨 심기 위해 가꾼 씨앗의 새싹
11.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격이나 철에 맞지 않는다는 고사성어)
12. 영어로 별, 떠오르는 사람을 지칭
13. 진료는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
14. 왕세자의 부인
16. 정기국회말고 수시로 열리는 국회
20. 피를 수혈할 때 ○○○이 같아야 하죠
23. 붉은 선, 붉은 줄
25. 빈터,空地

<가로열쇠>

1. 떨어져 있거나 헤어져 있는 식구
4. 임금에게 올리는 글
6. 국회의 특청 및 지방자치제의 지방○○
7.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뜻의 고사성어
10.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샘플로 꾸며 놓은 집
14. 조선왕조 제4대왕, 태종의 셋째 아들
15. 일생을 좌우할 만한 타격
15. 영어로 시간을 말한다면?
17. 결혼을 약속한 사람
18. 네바퀴가 돌면서 도로를 달리는 것
19. 흔히 어지러운 증세를 말할 때
21. 나의 조국, 내가 사는 나라
22. 일의 공적 또는 업무의 실적
24.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을 흔히 ○○화면이라고 합니다.
26. 객관식 시험은 사지○○○
27. 컴퓨터의 새로운 정보세계, 정보의 바다, 시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제엽서에 붙여 연구원 출판실에 보내 주시는 분 중에서 정답자 4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 2000년 8월 10일(목)까지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범죄일반

- 89-01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 89-04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89-07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 90-05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0-07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08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13 유흥업소 주변에서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 90-16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 90-22 낙태죄와 간통죄에 관한 연구
- 90-26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0-23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 91-0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91-0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5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1-07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9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 91-13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 91-15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 91-17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 91-25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26 사회구조와 범죄
- 91-28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 91-30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 91-32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92-05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06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12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 92-13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2-14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2-15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
- 92-28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30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 93-05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93-1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 93-18 도시성장과 범죄
- 93-23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 93-2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 93-31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 94-03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4-08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94-22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94-25 뇌물죄에 관한 연구
- 94-27 증권범죄에 관한 연구
- 94-30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 95-02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5-04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 95-07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5-08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 95-10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95-14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95-16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5-17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95-24 범죄신고 증진방안

- 95-2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95-27 비행의 조기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 96-01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 96-04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 96-06 서울시민의 기초질서준수에 관한 연구
- 96-08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관행
- 96-09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 96-11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97-02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
- 97-05 차량절도의 실태와 대책
- 97-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 97-07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 97-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97-09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
- 97-11 컴퓨터를 이용한 몽타주 제작법 개발
- 97-17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 97-1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97-21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64-1996
- 98-02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촌지관행을 중심으로 -
- 98-04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98-06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대책
- 98-07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 98-08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 98-09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 98-10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 98-11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98-12 AIDS와 관련된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 98-13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98-14 부정부패의 사회문화와 개선방안 모색
- 98-15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 98-1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그 통제방안
- 99-01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 99-06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 99-0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 99-14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 99-15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1985-1998
- 99-17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 99-21 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 99-22 범죄심각성 점수

소년범죄

- 89-0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90-01 소년원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 90-0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0-1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연구
- 90-1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 90-12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90-14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 90-20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 90-19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91-08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 91-11 약물남용자의 치료상의 문제점과 대책
- 91-18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91-22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4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08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92-18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19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 92-21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 92-2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실태
- 92-31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93-01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 93-03 소년범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93-0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 94-02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 94-0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 94-07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94-10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4-12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94-15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94-24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연구
- 94-31 소년원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95-01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95-03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5-18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 95-23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 95-30 독일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96-0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예방전략
- 96-03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 96-12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6-14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 방안
- 97-01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99-04 한국의 청소년범죄 연구동향
- 99-19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II)
- 99-20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1966-1998

교정 보호

- 89-02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89-06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90-27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28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91-06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 91-10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1-14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 91-19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1-27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에 관한 연구
- 91-33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 92-0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 92-04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2-09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92-20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 92-26 누범에 관한 연구
- 92-29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 93-08 강력범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3-1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 93-16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93-33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4-01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 94-05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 94-06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94-20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94-21 재소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94-23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 94-32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비교
- 95-13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95-19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 95-31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95-32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 96-05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6-16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97-03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 97-10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97-14 가석방심사체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98-01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 98-1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 99-03 교도소내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형사법과 형사절차

- 89-05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 89-08 정보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 90-02 수사경찰의 근무실태
- 90-03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 90-04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 90-06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15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 90-17 파출소단위 방법활동 개선방안 연구
- 90-18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21 각국의 구속제도
- 90-24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 90-25 질서위반법
- 91-0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91-04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 91-1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 91-16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91-20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91-2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 91-29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 91-31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 91-34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 91-35 조세범처벌 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92-01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92-02 현금다액취급업소의 방법대책 연구
- 92-07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 92-10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92-11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92-16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 92-17 현행 약물남용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92-22 유전자 감정의 범죄수사응용에 관한 연구

- 92-23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 92-25 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 92-27 미국의 유죄담변협상제도
- 92-32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이론상의 문제점
- 93-02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93-06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93-07 국선번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 93-09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
- 93-10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 93-11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93-12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 93-14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 93-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 93-19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 93-20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 93-21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 93-22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 93-24 안락사에 관한 연구
- 93-25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 93-27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 93-28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93-29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 93-30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93-32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93-34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 94-09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94-11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 94-13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4-14 각국의 테러범죄 대응책에 관한 연구
- 94-16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17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 94-18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 94-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 94-26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 94-28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 94-29 국제환경형법
- 94-33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
- 95-05 범죄인인도에 관한 연구
- 95-06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 95-09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 95-11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95-12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 95-15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 95-20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 95-21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95-22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 95-25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 95-28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95-29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96-07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 96-10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한 연구
- 96-13 독일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 96-15 형사사법기관편람

- 96-17 제조물의 하자에 의한 형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97-04 각국의 검찰제도
- 97-12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 97-13 구속영장심사와 피의자심문
- 97-15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유사처벌조항 정비 방안
- 97-16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 97-19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 97-20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 98-03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 98-05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 98-16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 98-19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방안 -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
- 98-20 각국의 몰수제도
- 98-21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99-02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 99-05 야생동물 밀렵의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
- 99-08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 99-0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99-10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9-11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영상매체의 활용
- 99-12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 99-13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 99-1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 99-18 범죄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비매출>

-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외국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실태
-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 기업범죄의 현황 및 정책분석
- 경찰분야 부정부패 방지대책
- UNCPCJ 회의 참가 및 관련 연구

기타 자료집

- 형법제정자료집
-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 정신감정과 치료감호자료집
- 양형연구자료집
- 형사정책문헌목록 I
- 형사정책문헌목록 II
- 형사정책 (번역총서 1)
- 양형론 (번역총서 2)
- 미국의 형사절차(번역총서 3)
- 청소년 비행의 이해(번역총서 4)
- 형사정책 (기본이론서 : 개정 2쇄판)
-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호 - 제42호)
-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호 - 제5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